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1호서식] <개정 2014.4.17>

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
신고인	① 상호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성명(대표자)	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
	⑤ 주소 (전화번호:)	

⑥ 업종			
⑦ 영업대상 폐기물			
⑧ 폐기물처리업 허가일	. . .	⑨ 최대 보관량	

⑩ 시설·장비 설치내용

시설·장비명	규격(능력)	소재지	방지시설	규격(능력)

⑪ 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
⑫ 변경사유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허가증 원본 2.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작성방법

1. ①란부터 ⑦란까지의 작성방법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서식(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)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.
2. ⑧란은 최초로 허가받은 허가 연월일을 적습니다.
3. ⑩란은 허가받은 시설·장비의 설치내용을 적습니다.
4. ⑪란은 변경신고하려는 내용을 적고, ⑫란은 변경사유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➜	접수	➜	검토	➜	실태조사	➜	결재	➜	허가증 발급
신고인				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						